

요약

가치사슬 내 온실가스 배출에 속하는 Scope 3 배출량 공시는 국가별로 도입 속도에 차이가 있음. 이는 가치사슬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점과 미국 보수 성향 주(州)의 “ESG 역풍” 현상 때문인 것으로 보임. Scope 3 배출량은 기후위험 노출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며, 미국에서도 진보 성향 주는 공시에 적극적이므로 Scope 3 배출량 공시는 결국 의무화될 것으로 보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둔 우리나라 기업도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여 Scope 3 배출량 공시에 대비해야 함

- 기업이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급 및 협력업체를 통하여 배출하는 온실가스인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공시 의무화 여부가 지속가능성 공시, 특히 기후 관련 공시에서 논의의 중심으로 부각되었음(부록 표 1) 참조)
 - 온실가스 배출은 크게 직·간접 배출로 구분되며,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부문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은 Scope 1,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영역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은 Scope 2, 3에 해당됨
 - Scope 2 배출은 기업이 구매하여 사용한 에너지(전력 등)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을, Scope 3 배출은 공급 및 협력업체와 투자대상 기업 등과 같은 기타 모든 사업활동(가치사슬)을 통한 간접배출을 각각 의미함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시의 범위를 놓고 국가별로 규제 강도에서 차이를 보이며, 특히 Scope 3 공시에 대해서는 공시 요건에서 제외하거나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미국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 대상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시 규칙을 도입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Scope 3 공시 요건을 제외하고 Scope 1, 2도 중요한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하였음
 - 반면, 지속가능성 공시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적용하면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시를 포함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하였음(표 1) 참조)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ISSB는 지속가능 재무공시를 적용하는 첫 번째 연도(FY2024)에만 예외적으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시의무의 유예를 허용함¹⁾

1) ISSB의 IFRS S1, S2를 자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의 표준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국가는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칠레, 말레이시아, 브라질,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KSSB를 설립하고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표 1〉 CSRD 연도별 적용 기업

종류	정의 및 세부 카테고리	비고
FY2024 (2025년 보고)	EU 상장 대기업 중 기존 NFRD 적용 기업	임직원 500명 이상 순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 총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FY2025 (2026년 보고)	EU 상장 대기업 중 기존 NFRD 비적용 기업	임직원 250명 이상 순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 총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FY2026 (2027년 보고)	상장 중소기업 (Opt-out) ²⁾	임직원 10명 이상 순 매출액 70만 유로 이상 총 자산 35만 유로 이상
FY2028 (2029년 보고)	유럽 내 순 매출액 1,500만 유로 이상의 비EU 기업 중 비교의 조건을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유럽 내 종속 대기업 소유 4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지점 소유 상장 중소기업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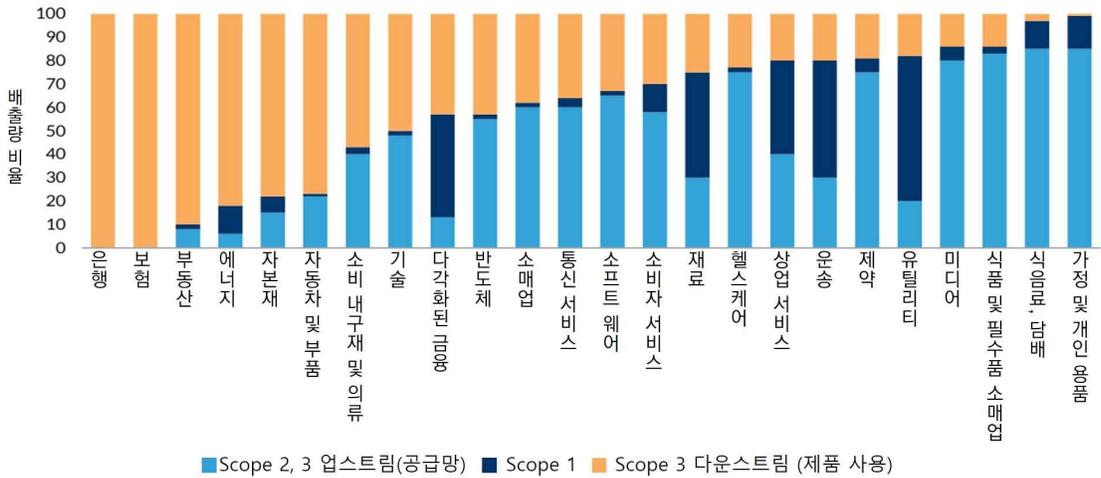
주: 1) EU 상장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비교에서 2개 이상 충족되는 기업이 CSRD 적용 대상임
 2)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 후 2년간 공시 선택에 대한 Opt-out 옵션이 부여되어, 가장 늦은 시점으로 FY2028년부터 공시할 수 있음
 자료: quantis(2023), "Everything businesses need to know about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특히 Scope 3 배출량 공시는 공급 및 협력업체와 투자대상 기업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부재와 미국 공화당 중심의 "ESG 역풍" 현상 때문에 나라별로 규제의 강도와 속도에서 차이가 벌어짐

- 기업들은 내부통제가 미치지 않는 공급 및 협력업체 등의 배출량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Scope 3 배출량 공시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러한 의견이 제도 도입의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보임²⁾
 - 특히 ① 데이터 집적의 한계, ② 배출량 산출 등에 대한 규제 정립의 불분명성, ③ 이해관계자(가치사슬 내 협력업체, 동종업계 이니셔티브 참여 등)의 소극적 태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ESG 역풍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은 ESG 기조에 대한 반발 현상을 의미하는데, 미국에서 ESG에 역행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 내부의 협력을 와해시키기도 하였음
 - 미국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반ESG 법으로는 텍사스주의 화석연료를 보이콧한 글로벌 펀드에 투자를 금지하는 법³⁾과 플로리다주의 공공부문에서 ESG 요소의 고려를 금지하는 법⁴⁾ 등을 들 수 있음
 - 미국 23개 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이 탄소중립보험연합(NZIA⁵⁾) 소속 보험회사의 화석연료 관련 보험인수 거절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서신을 보내면서 대형 보험회사들이 NZIA에서 대거 탈퇴한 사례⁶⁾도 있음

2) Deloitte(2023), "Challenges and solutions in measuring and reporting Scope 3 emissions"
 3) Senate Bill 13(2021), "Relating to state contracts with and investments in certain companies that boycott energy companies"
 4) House Bill 3(2023), "An Act Relating to Government and Corporate Activism"(HB 3)
 5) Net-Zero Insurance Alliance;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연합
 6) Reuters(2023), "Insurers' climate alliance loses nearly half its members after more quit"

〈그림 1〉 산업별 Scope 3 온실가스 배출 비중



자료: TCFD(2021. 10), "Guidance on Metrics, Targets, and Transition Plans"

- 전술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필요성은 물론 기업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관점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작년에 발표된 IPCC의 제6차 기후변화종합보고서는 예상보다 빠른 지구온난화를 보고하였으며, Scope 3 배출량은 기업의 환경 영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이에 대한 공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요소임
 - 금융산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에서 Scope 3 배출량의 비중은 Scope 1과 Scope 2 배출량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Scope 3 배출량은 이들 산업에서 기후 관련 위험 노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그림 1) 참조
 -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와 운송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은행,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Scope 3 배출량의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부 보수 성향 주(州)의 ESG 역풍 현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주(州)의 주도 아래 Scope 3 공시에 대한 합의가 모아지고 있으므로, Scope 3 공시 의무화는 결국 국제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
 - 캘리포니아주는 기후데이터 책임법(SB 253)을 통해 매출 10억 달러 이상 상장 및 비상장 미국 기업에 FY2026부터 Scope 1, 2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FY2027부터 Scope 3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세계 4위 경제규모의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 발표로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생산을 촉진한 선례가 있으므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서도 유사한 정책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뉴욕주도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 Scope 3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기후기업책임법(Climate Corporate Accountability Act)7)의 제정을 앞두고 있음

7) Senate Bill S897A

- 2026년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둔 우리나라의 기업과 규제당국도 장기적으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도입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부터 Scope 3 배출량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장기적으로 이들 기업이 가치사슬 기업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여 Scope 3 공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대기업의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공급 및 협력업체의 Scope 1 및 2 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가용하도록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⁸⁾

8) 지난 3월 EU 이사회는 공급망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3D)을 채택함. 적용 대상 기업은 작간접 협력사 등 가치사슬 기업을 실시하여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포함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며, 기후변화 완화 전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비EU 대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므로 EU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도 대비가 필요함

부록

〈부록 표 1〉 Scope 1, 2, 3 정의 및 세부 내용

종류		정의 및 세부 카테고리	
직접배출	Scope 1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산에서 기인한 배출량	
간접배출	Scope 2	기업이 사업 운영을 위해 제3자로부터 구매 및 취득하여 소비한 전력, 열에너지	
	Scope 3	기업 통제권 밖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고 Scope 2를 제외한 모든 간접배출	
		업스트림(Upstream)	다운스트림(Downstream)
		1. 기업이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 2. 자본재 3. 연료/에너지 4. 기업이 구매한 서비스의 운송/유통 5. 사업 운영에 기인한 폐기물 6. 임직원 출장 7. 임직원 통근 8. 기업이 임차한 자산	9. 기업이 판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운송/유통 10. 판매된 제품 가공 11. 판매된 제품 사용 12. 판매된 제품 폐기 13. 타 업체에 임대해 준 자산 14. 프랜차이즈 15. 투자

자료: GHG Protocol(2013), "Technical Guidance for Calculating Scope 3 Emissions(version 1.0)"

〈부록 표 2〉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 규제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 공시 관련 비교

구분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 규제		
	ISSB IFRS S1, S2	EU CSRD	US SEC Rule
적용 지역	전 세계 (각국의 독립적 채택)	유럽연합	미국
적용 시점	FY2024~	FY2024~2028(전체 적용까지)	FY2025~2033(전체 적용까지)
대상 기업	-	직원 500명 이상의 상장 기업 FY2025부터 대상 기업 확대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대기업 FY2026부터 대상 기업 확대
Scope 1, 2, 3 공시 여부	Scope 1, 2, 3	Scope 1, 2, 3	Scope 1, 2 Scope 3 제외
Scope 1, 2, 3 공시 특이사항	동 기준을 채택한 국가 상황에 따라 Scope 3 공시 시기 규정	750명 이하 기업은 공시 첫째 Scope 3 공시 생략 가능	상장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만 Scope 1, 2 공시 의무 부과

자료: Bichet et al.(2024), "Comparing the SEC Climate Rules to California, EU and ISSB Disclosure Frameworks"